



제343회 임시회
2015. 10. 21.(수)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
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의회
정책복지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- 제출일자 : 2015년 10월 2일
- 회부일자 : 2015년 10월 5일

다. 상정일자 : 2015년 10월 13일

- 제34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(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권석규 보건복지국장)

가. 제안이유

- 도민에게 불편 부담되는 자치법규 내 불합리한 등록규제 일괄정비계획에 따라 규제를 정비 하고자 함.
- 「행정규제기본법」에 따라 일부 모호하거나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조례 내 위탁운영 취소사유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정비함으로써 동 조례의 규제 내용의 객관성·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운영의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
3. 검토보고 요지

(정책복지 수석전문위원 오범진)

- 동 조례안은 「행정규제 기본법」 제4조(규제 법정주의)에 따라 규제의 명확성을 기하고자, 모호하고 추상적인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동 조례안의 개정 내용을 살펴보면,
기존 조례 제10조에 명시된 위탁운영 취소 사유 중 제4호 ‘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’ 는 규제법정주의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기준 자체가 모호한 규정으로 이를 삭제한 것은 법리적, 내용적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다만, 기존 조례 제10조제1항제5호에 명시된,
‘기타 도지사가 위탁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’ 도
단체장의 재량범위가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, 이를 존속시킨
이유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함.
※ 「충청북도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제11조(위탁의 취소)의 경우, 아래 3, 5호를 삭제하였음.
3. 공익상 위탁운영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5.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였을 때

< 참고자료 >

1.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위탁 현황

I | 위탁개요

근거

-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, 제5조, 제6조
-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제4조

기간 : 2015. 6. 12 ~ 2018. 6. 11(3년간)

수탁자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 (회장 심의보)

II | 위탁대상

시설현황

- 시설명 : 충청북도 종합사회복지센터(청주시 흥덕구 복대동)
- 규모 : 부지 4,121m², 연면적 5,570.51m²(지상 5층, 지하 1층)
- 개관일 : 2006. 9. 8 (준공일 2006. 6. 15)
- 직원현황 : 9명(센터장 1, 직원 8)
- 입주단체 : 14개 기관·단체
- 주요사업
 - 사회복지자원의 연계,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지원
 - 사회복지서비스 및 자원에 관한 정보 제공
 - 사회복지에 관한 각종 연구·조사 및 프로그램의 개발
 - 사회복지 역량강화 교육, 사회복지시설 경영지원·컨설팅
 - 충청북도와 수탁법인에서 위탁받은 사업
 - 시설관리 및 임대사업

예산규모

- 지원액 : 440백만원(도비, 예산 변경가능)
- 지원내역 : 인건비 및 운영비, 사업추진에 필요한 경비

Ⅲ | 그동안 위탁 경과

□ 위탁경과

- 1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06. 6. 13 ~ 2009. 6. 12)
- 2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09. 6. 12 ~ 2012. 6. 11)
- 3회 : 충청북도사회복지협의회(2012. 6. 12 ~ 2015. 6. 11)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5. 토론요지 : “생략”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의견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종합사회복지센터 설치 및 위탁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위탁운영의 취소)①도지사 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위 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.</p> <p>1.~ 3. (생략)</p> <p>4. <u>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</u></p> <p>5. (생략)</p>	<p>제10조(위탁운영의 취소)①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<삭 제></u>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법령 발취

□ 행정규제 기본법

제4조(규제 법정주의)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,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.

제5조(규제의 원칙)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여야 하며, 규제를 정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규제를 정할 때에는 국민의 생명·인권·보건 및 환경 등의 보호와 식품·의약품의 안전을 위한 실효성이 있는 규제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규제의 대상과 수단은 규제의 목적 실현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객관성·투명성 및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설정되어야 한다.

□ 지방자치법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제104조(사무의 위임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 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

제25조(사용·수익허가의 취소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·수익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1.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을 제20조제3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사용·수익하게 한 경우
2.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
3.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사용·수익의 허가를 받은 행정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
4. 거짓 진술,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,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
5. 제22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·수익을 허가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게 된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
③ 제2항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하여 해당 허가를 받은 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한다.

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·수익허가를 취소한 경우 그 행정재산이 기부채납된 행정재산으로서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라 이를 사용·수익하고 있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 사용·수익자에게 취소의 사실을 알려야 한다.